

지역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발전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때 협력하는 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상호간,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기초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는 물론,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 권역간 연계·협력도 포함하는 실용적 개념으로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고령화·저성장 시대에는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재정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 중앙-지방간 협력사업,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사업(시설)의 융복합화사업 등 다양한 방식의 연계협력방식을 추진함으로써 부족한 인적, 물적 사업역량을 보완하고 한정된 지역발전 투자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을 통하여 중복투자과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할 뿐 아니라 분산투자 로 인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절감하고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 결합생산을 통하여 투입 대비 추가이익의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공공서비스를 공동 생산함으로써 사업규모와 추진역량을 증대시키고 임계수요(criticalthreshold)를 확보함으로써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실현해야 한다.

시군, 접경지역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표 1〉광역개발권의 지원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광특계정
기초생활권 (시·군)	-	1개(100억원)	11개(1,000억원) (12개, 신규 2개)	지역
광역경제권 (시·도)	540억원 (30개)	1,000억원 (30개)	1,150억원 (30개, 신규 150억)	광역계정
초광역개발권 (광역권간)	67억원 (5개)	100억원 (5개)	215억원 (5개, 신규 3개)	광역계정
계	607억원 (35개)	1,100억원 (65개)	1,365억원 (67개, 신규 150억 + α)	

주민들의 생활패턴은 광역화된 지가 오래이며, 지역 그리고 국가간 경제 및 교류활동의 범위도 행정구역을 벗어난지 오래입니다. 5+2 광역경제권은 현 정부의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정책기조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발전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09